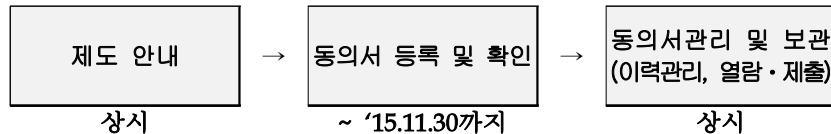


「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」 업무안내

□ 제도개요(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)

- 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‘금융거래(잔액)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’ 를 제출하는 경우, 위원회는 금융기관,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요청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정기변동신고기간 중에 제공함으로써 신고 편의를 제고함

□ 업무추진절차



□ 행정사항

-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고려한 철저한 제도안내
 - 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 - ※ 각 기관의 산하기관, 공직유관단체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
- 「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」 업무처리절차 숙지 및 준수
 - 원본동의서(자필서명필) 미접수, PETI시스템 사용미숙 등으로 '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사전 정보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
<붙임1> 「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」 업무처리절차(상세) 1부.

<붙임2> 등록의무자용 -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제도 안내(예시) 1부.

<붙임1>

「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」 업무처리절차(상세)

□ 등록의무자에게 제도 안내(상시)

- 신규자, 신고유예 복귀자, 미동의자에게 반드시 안내
- 기 동의자의 경우 중복하여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을 안내
 - 기 동의한 가족 외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 : 동의서
 - 내용(관계, 주민등록번호, 성명)수정이 필요한 경우 : 철회서, 동의서
 - 의무면제자가 재등록 기간(전보, 강임, 강등 : 3년, 퇴직 : 1년 이내) 경과 후 다시 의무자가 된 경우 : 철회서, 동의서
- 기관 내부망(메모보고) 또는 전자메일, SMS발송 등의 방법 활용

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 등록 및 확인(~11.30까지)

1. 동의자들 모두의 서명이 있는 원본동의서 접수(자필서명 또는 무인 확인)
 - 인감의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(서명감포함),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
2. PETI시스템에 동의한 내용과 제출한 원본동의서(의무자와의 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에 있는 내용을 비교
3. PETI시스템에서 [확인] 처리
 - 동의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무자에게 동의서 재수령 등 조치

○ 등록의무자가 원본동의서만 제출한 경우

- 담당자는 원본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 후 PETI시스템에 입력하고, 원본동의서 스캔파일을 반드시 추가하여 [확인] 처리

○ 등록의무자가 PETI시스템을 통해 동의한 경우

- 업무담당자는 원본동의서를 반드시 수령하고, 원본동의서와 PETI 시스템상의 동의내용(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서명 등)을 비교하여 [확인] 처리

□ 동의서 관리 및 보관(상시)

-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등록의무자별로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며,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장(또는 여러번)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함
- 등록의무자가 전출 등에 따라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최초 등록기관에서 동의서를 관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PETI시스템에서 조회만 가능하도록 함

예) '관세청' 에서 최초 동의서 제출인 경우 '서울특별시' 로 전출 가더라도 원본동의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산동의서 조회만 서울특별시에서 가능

※ 원본동의서는 명의인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함으로 그 관리, 보관에 유의

<붙임2>

등록의무자용 안내

'16년 정기변동신고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원하는 의무자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'15.10.30까지 소속기관에 수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, 동의의 효력은 동의철회서 제출 전까지임

※ 동의서 미제출자는 정기변동신고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함

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

-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(자동차, 회원권 제외) 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(자필서명 등)을 받은 동의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)를 제출해야 함
- 기 동의서 제출자는 그 효력이 유지되나, 인적사항(의무자와의 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)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친족이 있는 경우 별도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
- 동의서에는 모든 동의자들의 각 의무자와의 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 확인(자필서명)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
- 동의서는 동의확인(자필서명)이 기재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FAX나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음
-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불필요함

<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>

▶ 제출일자	▶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는 매년 11.30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
▶ 동의자 관계	▶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·비속만 동의 가능 ▶ '09.2.30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 ▶ 친족간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각각 제출
▶ 동의자 성명	▶ 성명에 '두음법칙이 적용'되거나 '개명'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른 경우 금융거래(잔액) 및 부동산정보 제공이 안될 수 있음 예시) 류↔유, 렬↔열, 라↔나 등
▶ 동의자 주민등록번호	▶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보 제공이 안됨
▶ 동의확인 (자필서명)	▶ 동의자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▶ 인감의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(서명 감포함),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▶ 동의확인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▶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출(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)
▶ 기타	▶ 제출기관(해당 등록기관), 제출일자 기재 ▶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존·비속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
□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

-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의무자(친족포함) 중 결혼, 이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동의철회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)를 제출하여야 함
- 동의철회서를 11.30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'16년 정기변동신고에 정보를 제공안함